##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127 발의연월일: 2022. 4. 6.

발 의 자:김용판·김상훈·이주환

박덕흠 • 엄태영 • 박대수

최춘식 · 김성원 · 추경호

김예지 · 김형동 · 박성민

이종성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특례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이후로 전례 없는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만큼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극 복하는 데 필요한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제1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6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의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	의 감면) ①
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u>202</u>	<u>202</u>
<u>2년 12월 31일</u> 까지 사회적기업	<u>4년 12월 31일</u>
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	
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	
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	
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	
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	
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	
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	
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	
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	
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